

제5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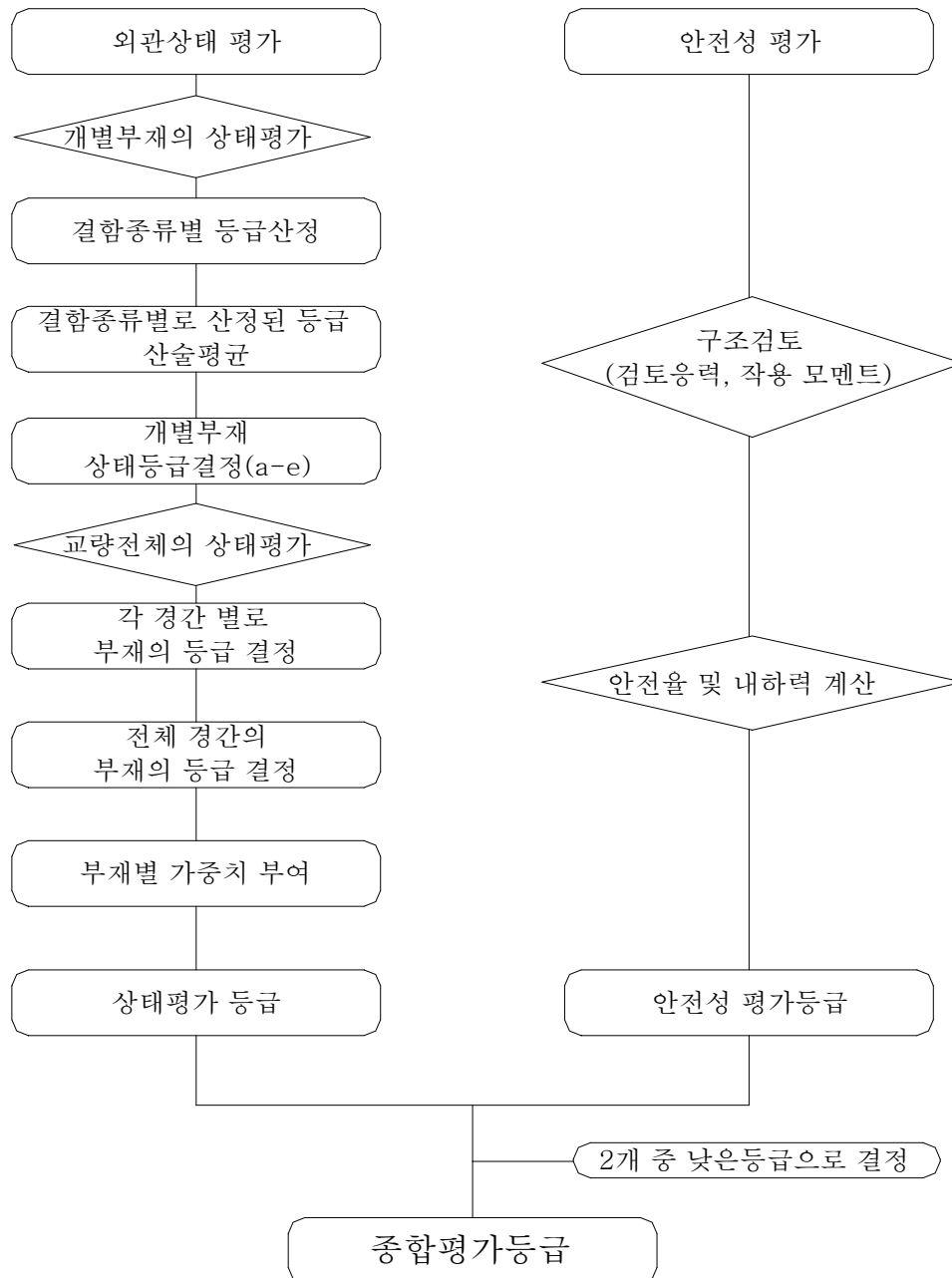
5.1 종합평가 산정절차

5.2 종합평가 결과

5.3 안전등급 지정

제 5 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1 종합평가 산정절차



【그림 5.1】 종합평가 등급 산정 흐름도

5.1.1 종합평가 기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에 의해 부여된 상태평가 등급이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전부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등급과 안전성평가등급을 비교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종합평가 결과

5.2.1 상태평가 결과

조양교(서울)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양호)”로 평가되었다.

【표 5.1】 전체교량 상태평가 결과표

구조물명	환 산 결함도지수	상태평가 결 과	연 장 (M)	차 선	길 이 X 차 선	연장비	환산결함도지수 X 연장비
조양교 (서울)	0.185	b	220	2	440	1.000	0.185
평가지수							0.185
상태평가 결과							b

5.2.2 종합평가 결과

조양교(서울)는 금회 정밀점검 대상교량으로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10.12), [교량편]」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상태평가 만을 수행하였으며, 상태평가 결과 『b』를 해당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한다.

■ 종합평가결과 : B

5.3 안전등급

5.3.1 안전등급 기준

【표 5.2】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비고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5.3.2 안전등급 지정

【표 5.3】 조양교(서울) 안전등급

구 분	상태평가	
	평가지수	평가기준
평가결과	0.185	B
안전등급 지정	▶ 조양교(서울)의 안전등급은 양호한 상태인 B등급으로 평가됨.	